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55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임오경·김재원·한민수

박상혁 • 문정복 • 서영교

윤호중・박 정・민병덕

윤후덕 • 위성곤 • 김남희

박홍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사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그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 및 부실공기업 해산요건과 관련한 규제가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대규모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후 분양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차별적 규제에 따른지역 균형발전 약화 문제도 가져옴.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대한 규제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해산요구 요건도 정비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지 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제7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후단 중 "정한다"를 "정하되,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렵거나 또는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부채 비율이 100분의 400(제2조제1항제7호·제8호·제10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0) 이상인 경우
-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 3.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 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정하되, 제2조제1항 제7호 · 제8호 및 제10호의 사 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자본금 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 한 해산 요구) ① 행정안전부 한 해산 요구) ① -----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사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 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렵거 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 나 또는 설립 목적의 달성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 을 요구할 수 있다.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 1. 부채 비율이 100분의 400(제 은 경우

-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

2조제1항제7호·제8호·제10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0) 이상 인 경우

-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 3.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